

2021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아동권리증진 공모사업 ‘권리야 날자!’안내

목 차

1. 2021년 공모사업 안내 / 2

- 공모사업 목적, 사업방향 /2
- 공모사업 개요, 진행일정 /3-4
- 심사기준, 주의사항 / 5

2. 예산편성 / 6

- 가. 예산작성 방법 / 6
- 나. 기타경비 예산 편성 기준
 - 1) 강사수당 지급 기준 / 6
 - 2) 식사비 및 간식비 기준/ 7
 - 3) 비품/장비 구입 시 / 7

3. 관련문의 / 9

4. 별첨자료 / 8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 관점 체크리스트

2021년 아동권리증진 공모사업

‘권리야 날자!’ 안내

1. 공모사업 안내

가. 공모사업 목적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기관과 연대 및 협력하여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 대응

* 재단의 복지사업방향 및 추구가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의 권리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복지사업을 실천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직접적인 문제해결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아동의 권리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무 이행자가 책무를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촉진한다.

나. 2021년 공모사업 개요

1) 사업주제: 위드(with)코로나 시대 아동¹⁾권리 보호 및 권리증진 사업

- 코로나19로 인해 박탈당한 놀이권, 보호권 및 학습 격차 해소 중심으로

* 사업주제 선정배경: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양육자 없이 홀로 집에 있는 시간 동안 라면형제 화재 사건 같은 일도 일어났습니다. 보호자와 집에 머물면서 아동학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전년도 대비 늘어났습니다. 등교를 못하게 되면서 집에서 스스로 학습을 해야 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학습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대면접촉을 할 수 없어 놀이터 대신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며 그 의존도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의 공모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한 성장을 저해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보호권, 놀이권, 학습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사업방향

-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고, 공모 주제를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성별, 인종, 장애 유무 등 차별 없이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권리기반사업

1) 아동이라 함은 만18세 이하로 정함.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포함.

- 공모 주제 범주에 맞는 창의적이고 실험성을 가미한 사업
- 아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아동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 재단 사업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와 연대 및 협력하는 사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기관의 규모, 형태와 상관없이 재단의 추구가치를 함께 하는 다양한 기관의 참여

3) 신청대상

아동¹⁾을 주 대상으로 비영리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4) 신청제외대상

- 동일사업으로 2020~2021년 재단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배분기관(재단 사업기관 포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기관
-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사업 또는 기관
- 법령상 금지된 영역의 사업 또는 유사사례로 법적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
- 정부 및 지자체
- 영리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기관 및 단체
- 기관(단체)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5) 사업내용

- 위드(with)코로나 시대의 아동의 주도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놀이를 통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위드(with)코로나 시대에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아동방임 및 유기, 체벌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
- 위드(with)아동이 성별/종교/장애/출신 등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

6) 신청금액: 기관별 최대 1,000만원

신청 시 참고사항

* 코로나 19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하여야 함. (비대면, 소규모 방식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활용 프로그램 등).

◦ 단순 문화소개 및 체험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은 지양

◦ 프로그램 구성 시 필수 포함 사항: 아동권리기반 공모사업 수행을 위한 아동권리교육(아동 대상)

7) 사업기간

2021년 2월 12일 ~ 2021년 12월 10일 (10개월)

다. 진행일정

구 분	진 행 일 정
공모사업 신청	1) 신청기간: 2020년 12월 14일~ 2021년 1월 21일(목)마감 2)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kwf38@childfund.or.kr) 3) 제출서류 가) 신청공문(직인필수) 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양식) 다) 고유번호증 또는 시설신고증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기관의 서류제출) 라)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양식) * 모든 서류는 각각의 단위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심사	1) 심사시간: 2021년 1월 22일(금)~ 2월 16일(화) 2) 심사과정: 1차 심사: 서류심사, 현장실사 또는 면접심사(대면/비대면) 2차 심사: 경기지역본부 배분심의위원회 선정발표: 유선 및 공문 3) 참고사항 - 현장실사는 필요 시 진행,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면 or 비대면 면접 진행
최종 선정발표	1) 일 자: 2020년 2월 16일(예정) 2) 방 법: 유선 및 공문안내 3) 참고사항: 1차 심사 과정에서 예산 조정 및 수정사업계획서 요청할 수 있음.
사업비 지급	1) 선정기관 제출서류 (잔액 0원 별도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2) 지급예정일: 2021년 2월 26일(금) 이내
협 약	1) 일 자: 2021년 3월 중 서면 교환으로 진행
지원기관 담당자 교육	1) 일 자: 2021년 2월 말 ~ 3월 초 2) 교육내용: 재단의 복지사업 이해, 사업진행방법 안내 등 3) 참 고: 담당자 필참, 일시장소 추후안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 진행여부 결정
모니터링	1) 3개월 단위 분기보고 및 수시 (6월, 9월/2회) 2) 연중 간담회 (온/오프라인)
결과보고 및 잔액반납	1) 일 자: 2021.12.10.(금)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심사기준

- 아동 참여도: 아동의 직접 참여(과정, 결과)를 통한 변화 창출 도모
-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책임감, 수행능력
- 사업 적합성: 사업방향 및 주제와의 적합성, 사업의 필요성, 변화의 가능성
- 실현 가능성: 사업의 구체성, 지역사회 연대계획
- 사업 준비성: 예산 구성의 타당성, 대응계획

마. 주의사항

- 1) 예산수립 시 의무 자부담 비율 없으며, 신청금액 중 사업비(직접)은 전체 예산 중 90% 이상을 책정,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10% 이내로 책정함. **(인건비는 책정 불가함)**
- 2) 성과평가가 불가한 직접적인 후원금 지원, 단순·일회성 물품지원 형태의 사업 및 예산수립 불가함.
(재단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거비 지원 및 의료비 지원사업 포함.)
- 3)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 운영 기본경비는 물론이고 자산취득 성격의 차량구입비와 비품구입비, 신청기관의 단순 시설 신·증축 및 부대 경비 등으로 지원금 사용은 불가함.
- 3)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기관은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기타사항

- 1) 재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사용계획을 근거로 사업수행 및 집행하여야 시행 및 집행하여야 하며 자의적 판단에 의한 시행은 불가함.
- 2) 사업수행 과정 중 사업계획 및 예산사용의 일부 조정이 발생하면 재단의 사전승인 후 시행함. 세목(프로그램 단위) 혹은 구분 간 30만 원 이상 변동 시 지역본부 승인사항으로 정함.
- 3)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중단, 환수 등의 조치와 더불어 향후 5년간 재단 공모사업 신청 불가함.
- 4) 선정기관은 담당자 교육(팀장 및 실무자)에 필수로 참석하여야 하며, 재단은 사업수행 점검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사업기관 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음. 또한 사업종료 후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음.
- 5) 제출된 서류는 공모사업 심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음.

2. 예산편성

가) 예산작성방법

- 1) 구분은 운영비, 사업비로만 구분
- 2) 전체 지원금(100%) 중 사업비 비율은 90% 이상, 운영비의 비율은 최대 10%임. (비율 규정 준수)
- 3) 세목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단위 편성
(세목은 프로그램 단위별로 작성하는 것이 예산 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있어 효율적임)
- 4) 각 항목별 예산의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작성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 구체적으로 기록)
- 5)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으며, 계획 대비 집행의 차이를 줄여 예산의 신뢰성을 확보

구분	설명	해당항목	참고
운영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접' 비용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유류비, 여비 등	10%
사업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 비용 (실인원수(아동중심)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식대, 간식비, 교육교재비, 입장료, 사업수행을 위한 재료비, 서비스 강사비 (아동프로그램 수행) 등	90%

**** 인건비는 지원 불가 하며, 학교의 경우 강사비 사용 불가**

나) 기타경비 예산편성 기준

1) 강사수당 지급 기준

항목	기준	사용한도	참고
강사비	-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또는 국영기업체장 -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최초 1시간 350,000원 - 초과 시간당 170,000원	강사비는 원고비 및 교통비가 포함된 비용임.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중역 - 판/검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 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 사회복지 기관·시설장	- 최초 1시간 280,000원 - 초과 시간당 140,000원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최초 1시간 200,000원 - 초과 시간당 100,000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통계이론, SAS, SPSS 등의 전문가 • 박사학위소지자 • 사회복지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 소지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3급 강사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 사회복지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가 없는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강사 • 특별강사, 일반1급, 일반2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초 1시간 150,000원 • 초과 시간당 75,000원	
보조 강사	• 주 강사를 보조하는 강사 (실기실습 보조 등)	• 최초 1시간 70,000원 • 초과 시간당 45,000원	
다수인 출강	• 2시간 이하	• 5인 이하 28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 이상 55만원	
	• 2시간 이상	• 5인 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2) 식사비 및 간식비 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	참 고
식사비	• 1인 기준	10,000원	• 간식비는 식대(1식)와 통합사용 가능 • 사업평가회, 감사행사 등의 저녁활동 진행시 꼭 필요한 경우
간식비	• 1인 / 1일 기준	5,000원	• 외식비 20,000원 편성 가능 • 외부기관과의 회의 진행시 간식비 및 식사비 편성 가능 • 필수첨부서류: 결과보고서(활동일지), 참여자 명단, 사진

3) 비품/장비 구입 시

-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장비는 구입 가능. 단, 관리 운영비(10%이내)로 편성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지급 유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공기관, 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 및 임직원

- 이상 공직자의 배우자

3. 관련 문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옹호사업팀 공모사업 담당자(031-234-2352 / 070-4352-7175)

※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 계획 점검

아동권리기반복지사업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사업계획 과정에서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 수행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점검.

원 칙	참 고 문 항
아동중심	- 아동을 권리주체자로 존중하는가? - 아동들에게 권리주체자임을 알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 아동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장애물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책임성	-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 원인 까지 감안하는가? - 의무이행자가 누구인지 구분하였고, 그들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는가? - 의무이행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비차별	- 프로그램 참여 아동을 선정하는 과정에 차별요소가 없는지 검토하였고, 차별요 소 없이 아동을 선정하였나? - 아동들의 이용 및 접근성을 감안하였는가? - 아동의 성별, 종교, 성적지향, 장애, 출신 등의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아동최상의 이익	- 프로그램 진행의 모든 과정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 진행 과정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과 충돌되는 상황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는가?
아동발달	- 아동의 연령 및 개별적 특성이 고려되었는가? - 아동의 연령 및 개별적 특성에 맞는 활동과 자원이 연계되었는가?
참여	- 아동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는가? - 아동들이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가? - 아동의 의견을 진지하게 반영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반영한 내용을 아 동에게 공유하였는가?
아동친화적 환경	-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되는가? - 개선된 아동친화적 환경요소는 무엇인가?
파트너십	- 아동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칠 기관과의 연대를 감안하는가? - 프로그램 진행 시 연대로 인한 긍정적 영향은 무엇인가?